

제343회 임시회
2015. 10. 21.(수)

심 사 보 고 서

○ 2016년도 정기분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충 청 북 도 의 회
행정문화위원회

「2016년도 정기분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 사 보 고 서

2015. 10. 21.(수)
행정문화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 출 자 : 충청북도지사

나. 제출일자 : 2015년 10월 2일

다. 회부일자 : 2015년 10월 5일

라. 상정일자 : 2015년 10월 14일

- 제343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문화위원회 : 상정 · 의결

마. 주요내용

-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심사의결(원안가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 행정국장 조운희)

가. 제안사유

- 우리 도에서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임차기관)에게 부지를 매입 후 제공하여 충북혁신도시로 이전을 촉진하고,
- 단양소방서 신축장소를 넓은 대체부지로 이전하는 것과,
- 청주의료원에 “심혈관센터”와 “인공신장실”을 설치하여 도민에게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 첨단의료기기 수출사업화 연구지원센터를 청주시와 공동으로 추진하고자 청주시에 센터 건립부지 일부를 처분하기 위하여,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충청북도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2조에 따라 201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여 도의회의 의결을 구하려는 것임.

나. 주요내용

□ 재산의 취득

《공공기관 이전지원 부지 매입》

- 위 치 : 음성군 맹동면 두성리 클러스터 7-1-3번지 등 5필지
- 사업기간 : 2016. 1. ~ 2016. 12.
- 매입규모 : 토지 8,225m²
- 사 업 비 : 2,057백만원(도비)

《단양소방서 변경 신축》

- 위 치 : 단양군 단양읍 별곡리 307(당초) ⇒ 별곡리 산284번지 일원(변경)
- 사업기간 : 2016. 2. ~ 2017. 6.
- 신축규모 : 부지면적 1,530m²(당초) ⇒ 6,015m²(변경)
건축연면적 2,300m²(지상2층, 철근콘크리트)
- 사 업 비 : 3,874백만원(도비) ※ 부지는 단양군에서 제공
- 설계비 158백만원, 건축비 등 3,716백만원
- 변경사유 : 넓은 부지로 이전하여 양질의 소방서비스 제공

《청주의료원 심혈관센터 및 인공신장실 설치》

- 위 치 : 청주시 서원구 사직1동 554-6번지(청주의료원 내 응급실 옆)
- 사업기간 : 2016. 1. ~ 2016. 12.
- 증축규모 : 992m²(지하1층, 지상4층)
- 사 업 비 : 37억원(국비 50%, 도비 50%)

□ 재산의 처분

《첨단의료기기 수출사업화 연구지원센터 건립 부지 일부 처분》

- 위 치 :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연제리 653번지
- 처분시기 : 2016년
- 처분규모 : 17,243.7㎡ 중 8,621.85㎡(50%)
- 매 수 자 : 청주시장
 - 도 소유 ⇒ 도와 청주시 1/2씩 공동 지분
- 매각금액 : 1,349백만원 (부지가격은 조성원가 156,380원/㎡산정)

3. 검토보고 요지

(행정문화전문위원 : 한철우)

- 2016년도 정기분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도민에게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청주의료원에 심근경색, 심부정맥 등을 치료할 수 있는 “심혈관 센터”와 “인공신장실”을 설치하는 것과,
- 단양소방서 신축장소를 보다 넓은 부지로 대체이전하는 것과 첨단의료기기 수출사업화 연구지원센터를 청주시와 공동으로 추진하고자 건립부지 일부를 청주시에 매각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음.
- 다만, 공공기관 이전부지 매입에 관한 건은 도비 2,057백만원으로 토지 8,225㎡를 매입하여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임차기관)에 제공하려는 것으로 본 이전기관에 대한 부지이대 제공에 따른 타 입주기관과의 형평성 문제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5. 토 론 요 지 : “생 략”

6.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7. 소 수 의 견 요 지 : “없 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9. 심사보고서 첨부서류

○ 2016년도 정기분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부.

2016년도 취득대상 재산목록(14-2)

○ 회계명 : 일반회계

(단위 : m², 천원)

일련 번호	재 산 표 시			추정가액	취 득 시 기	취 득 사 유	취득재산 전소유자	비고
	지목	소 재 지	면 적					
계	토지	1건	8,225	2,056,250				
	건물	2건	3,292	7,573,485				
	기타							
1	토지	음성군 맹동면 두성리 클러스터 7-1-3번지 등 5필지	8,225	2,056,250	2016.1~ 2016.12	공공기관 이전 지원으로 경제 활성화	한국 토지 주택공사	매입
	건물	단양군 단양읍 별곡리 산28-4번지 일원	2,300	3,873,485	2016.2~ 2017.6	단양소방서 신축		위 치 변경
	기타							
2	토지							
	건물	청주시 서원구 사직1동 554-6번지	992	3,700,000	2016.1~ 2016.12	심혈관센터 및 인공신장실 설치		증축
	기타							
3	토지							
	건물							
	기타							
4	토지							
	건물							
	기타							
5	토지							
	건물							
	기타							

2016년도 처분대상 재산목록(14-3)

○ 회계명 : 일반회계

(단위 : m², 천원)

일련 번호	재 산 표 시			추정가액	처 분 시 기	처 분 사 유	매수자	비고
	지목	소 재 지	면 적					
계	토지	1건	8,621.9	1,348,285				
	건물							
	기타							
1	토지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연제리 653	8,621.9	1,348,285	2016	첨단의료기기 수출 사업화 연구지원센 터 부지 공동 지분	청주시	
	건물							
	기타							
2	토지							
	건물							
	기타							
3	토지							
	건물							
	기타							
4	토지							
	건물							
	기타							
5	토지							
	건물							
	기타							

관계법령발취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p>제10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지방의회에서 의결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세워 그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관리계획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p> <p>② 관리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공유재산의 범위, 관리계획의 작성기준 및 변경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③ 관리계획에 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았을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제6호에 따른 중요 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은 것으로 본다.</p> <p>제29조(계약의 방법) ① 일반재산을 매각하거나 매각하는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그 뜻을 공고하여 일반입찰에 부쳐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지명경쟁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으며, 증권의 경우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9항에 따른 증권매출의 방법으로 하며, 이 법 제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일반재산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제76조제2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0.2.4., 2015.1.20.></p> <p>② 제1항 단서에 따라 증권을 매각하는 경우 가격산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제7조 (공유재산의 관리계획) 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매입, 기부채납, 무상 양수, 환지(換地), 무상 귀속, 교환, 건물의 신축·증축 및 공작물의 설치, 출자 및 그 밖의 취득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처분(매각, 양여, 교환, 무상 귀속, 건물의 멸실, 출자 및 그 밖의 처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한다.</p> <p>1. 1건당 기준가격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인 재산</p> <p>가. 취득의 경우: 20억원(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10억원)</p> <p>나. 처분의 경우: 10억원(서울특별시와 경기도의 경우에는 20억원)</p> <p>2. 토지의 경우 1건당 토지 면적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면적 이상인 토지</p> <p>가. 취득의 경우: 1건당 6천제곱미터</p> <p>나. 처분의 경우: 1건당 5천제곱미터</p> <p>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리계획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은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변경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p> <p>2. 취득·처분하고자 하는 공유재산의 위치가 변경된 경우</p> <p>제38조(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 등)</p> <p>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일반재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29조제1항 단서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다.</p> <p>1.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려는 경우</p>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조례 및 시행규칙】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조례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조례 시행규칙
<p>제12조(공유재산 관리계획) ① 법 제10조 및 영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도지사가 다음 연도 예산을 의결하기 전까지 충청북도의회(이하“도의회”라 한다)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 공유재산을 취득·처분하여야 한다. 다만, 연도 중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변동이 있을 시는 변경계획을 작성하여 추가경정 예산을 의결하기 전까지 도의회 의결을 받아야 한다.</p> <p>②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작성은 재산관리 총괄 전담부서에서 하여야 한다. 다만, 공유림에 대해서는 공유임야관리 전담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p> <p>제14조 (공유재산 관리계획서)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서의 작성 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p>	<p>제28조(공유재산관리계획서 등) 공유재산 관리계획서 및 공유재산 매매계약서 등의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공유재산관리계획서(별지 제15호 서식) 2. 공유재산매매계약서(별지 제16호 서식) 3. 양여계약서(별지 제17호 서식) 4. 공유재산매수요구서(별지 제18호 서식) 5. 교환계약서 (별지 제19호 서식)